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24일, 박규탁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2023년 3월 1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규탁 의원

나. 제안이유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성능,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무인항공기 등의 순찰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대나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5항)
-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가. 개정이유

- 효과적인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첨단 기술들과 정보들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도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불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대나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주요내용

- 안 제7조제5항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무인항공기 정의]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Drone)을 포함한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프로그램 된 경로 등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포함한 비행장치와 개인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 기타 사항들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종합의견

- 최근 산불의 발생이 장기화·대형화 되면서¹⁾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2022년 110건에, 피해면적이 1만 6,788.49ha에 달하였고, 올해 2월 21일 기준, 총 15건에 피해면적이 35.94ha에 달합니다.
- 현행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수립,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산불방지행사 및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불은 초기 발견이 어렵고 야간 진화의 한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²⁾과 보다 강력한 제도 및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대형산불: 피해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경북도 대형산불 발생현황은 불입자료 1을 참고.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첨단 장비인 무인항공기 등의 순찰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대나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방지하고, 대응하여 산불로 인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산림청은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 드론 감시단’을 편성하고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산림청은 ‘산불드론’ 3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음. 산불진화에 있어서도 드론진화대(10개단, 26대)을 통하여 인력접근이 어려운 암석지대·야간산불에 대응하고 있음.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드론(116대)으로 야간 산불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진화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